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단53183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

피 고 1. B

2.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과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0. 2. 28. 접수 제282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과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48호1) 포함)에 관하여 2020. 3.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48호 포함)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20. 3. 12. 접수 제10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A 사이에 2020. 4.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E과 A 사이에 2020. 4.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에게, 피고 D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20. 4. 16. 접수 제149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20. 5. 6. 접수 제176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8. 3. 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의 G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63,000,000원, 보증기한 2023. 3. 24.로 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9. 11. 25. F과 사이에 F의 H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22. 11. 25.로 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잔액을 회수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 F은 2020. 3. 27.경 G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21. 1. 27. G은행에 41,428,164원을, 2021. 4. 22. H은행에 100,383,56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A은 2020. 2. 27.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28.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3. 9.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48호 포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2.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A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4. 피고 D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16. 피고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4. 29. 피고 E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6. 피고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20. 12. 17.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A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개회22903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21. 3.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11. 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지 않았다.

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22. 3. 11.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A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 소송수계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 소송수계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원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의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유리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 동

[도르농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6층 [] 호 125.7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 대 78630.8㎡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78630.80분의 81.485

2. 경기도 포천시 [] 공장용지 2212㎡

(공장 및 광업재단 지방법 제6조 목록 제2020-38호의 기계기구목록표)

계측명	용량	제조회사	개수	비고
보일러	3톤	미상	1	
세탁기	400K	미상	10	
세탁기	300K	미상	2	
세탁기	200K	미상	3	
세탁기	50K	미상	4	
탈수기	47인치	미상	3	
건조기	100K	미상	8	
자동구제기계		미상	2	
브러쉬기계		미상	7	

3. 경기도 포천시 []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공장 및 사무실

1층 810㎡

2층 73.20㎡

지하 33.6㎡

(내역:1층공장 2층사무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석당 및 숙직실 81.60㎡

4. 경기도 포천시 [] 공장용지 65㎡

5. 경기도 포천시 [] 공장용지 348㎡

1) 청구취지 및 별지 기재 '제2020-38호'는 '제2020-48호'의 오타로 보인다. 이하 같다.